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9월 13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 취급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명칭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오인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른 인증의 대상이나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증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정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① 농산물 직매장, ② 농산물 직거래 장터, ③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④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의 사업장을 의미함.

현행법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절차,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인증의 취소, 사후관리, 청문,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농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판매면적 100㎡ 이상)을 대상으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40개소의 직거래사업장이 동 인증을 받아 운영 중임.

개정안은 ① 현행법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② 농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인증’이 아닌 ‘지정’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하여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명칭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소비자 또는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운영자 등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동 제도는 우수한 운영체계를 갖춘 ‘직거래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임에도 품질이 좋은 ‘우수 농산물’을 거래하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개정안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여 동 제도의 운영에 따른 일반 국민 등의 혼란을 경감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둘째, ②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질이 인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임.

인증(certification)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적으로 확인·증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놓고,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인증기관이 적합여부를 심사·평가하는 제도임. 즉,

제품·서비스가 아닌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아닌 ‘기업(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인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반면, 지정은 ①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②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③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④ 규제 대상 선정 지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념임.

현행법에 따른 동 제도는 우수한 운영체계를 갖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지원·육성 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은 지정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현행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인증’이라는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최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 2. 27.)에서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안건 심의 결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